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 일반당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중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김정직 강사

- 내용을 입력하세요
- 내용을 입력하세요
- 내용을 입력하세요
- 내용을 입력하세요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CONTENTS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1.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의 정의 및 의의 등)

2. 주체별 선거운동방법 및 사례

1. 일반당원의 선거운동
2.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최근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사항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허용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명함 교부 가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배부 금지**

최근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만 연 1회(4월 첫 수요일)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4월·10월 첫 수요일)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선거비용제한액의 50%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1.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의 의의와 정의 등

선거운동이란?

의 의

-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에 있어 득표과정으로서의 중요한 선거과정
- 상대자가 있는 경쟁과정이므로 **공정성** 요구
- **선거의 자유** 보장
- 유권자 입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선거운동의 자유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

정 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6.8.26)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행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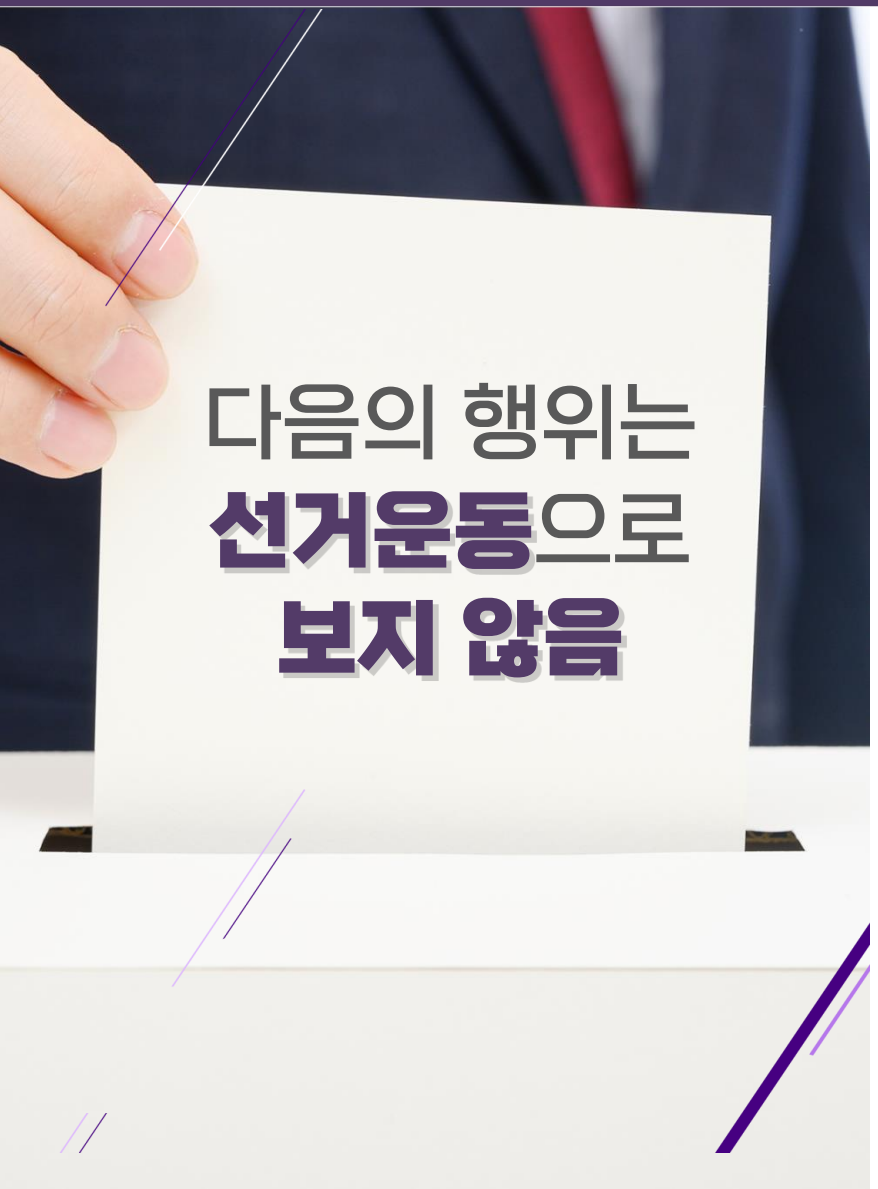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그림말·음성 · 화상 · 동영상 등 포함)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일
전일

후보자등록을 일찍 하였다고 하여
다른 후보자보다 빨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대통령 선거 **22일**(22. 2. 15. ~ 3. 8.)

  국회의원 등 그 밖의 선거 **13일**(22. 5. 19. ~ 5. 31.)

-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평상시 선거운동** 가능
  (법 제5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
  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가능
- 미성년자 (초등학생 중학생)
- 선거권이 없는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선박의 선장(대통령선거)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
-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수협 ·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 ·직원,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단체대표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금지]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2. 주체별 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및 사례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하고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불가피**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 제한되는 자** 제외,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인정
-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 등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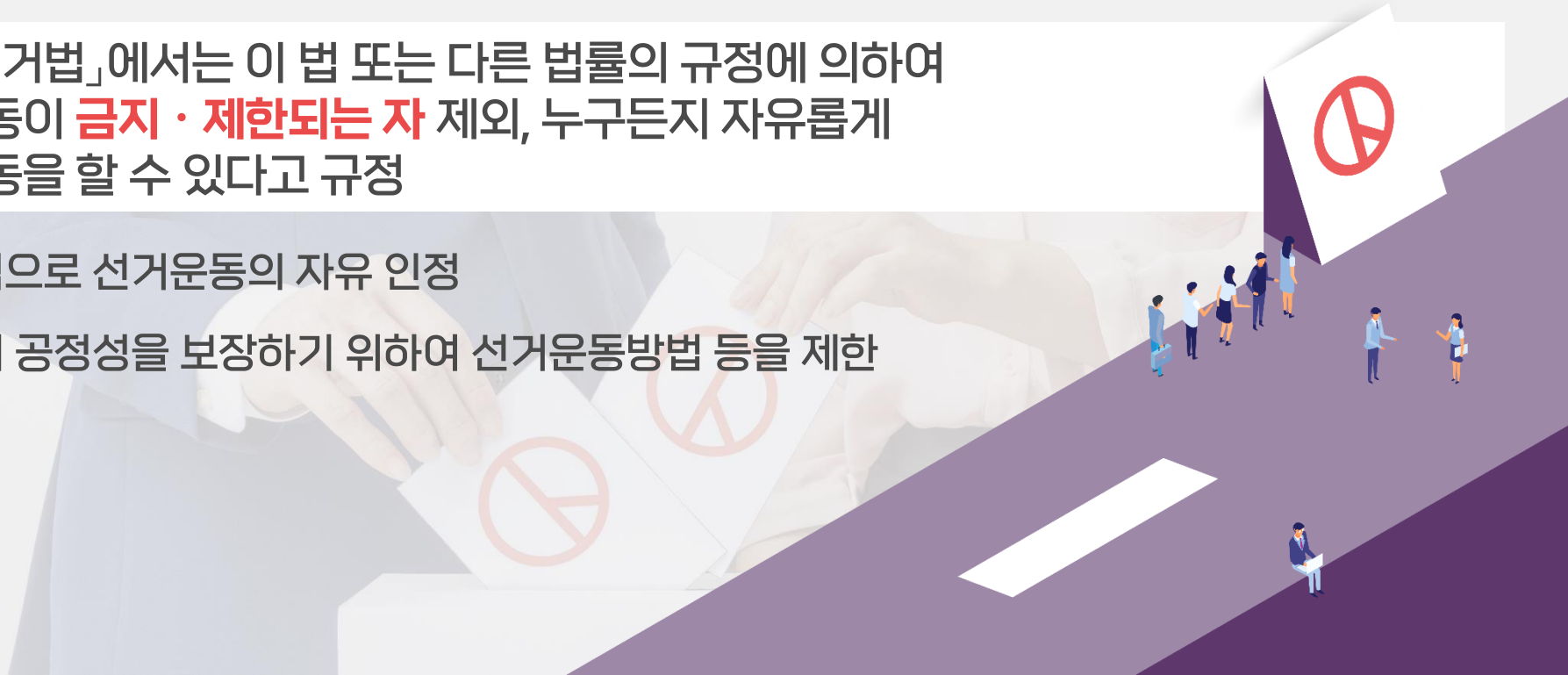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01

일 반
당 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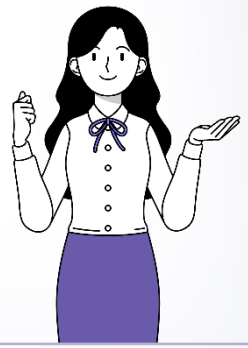

선거사무
관 계 자

03

예비후보자
후 보 자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가능한 선거운동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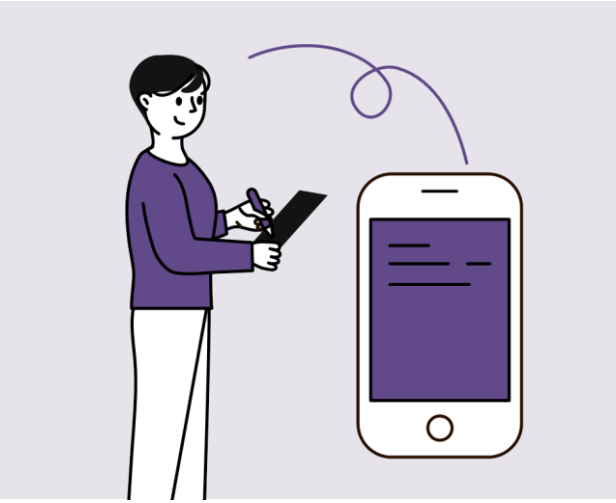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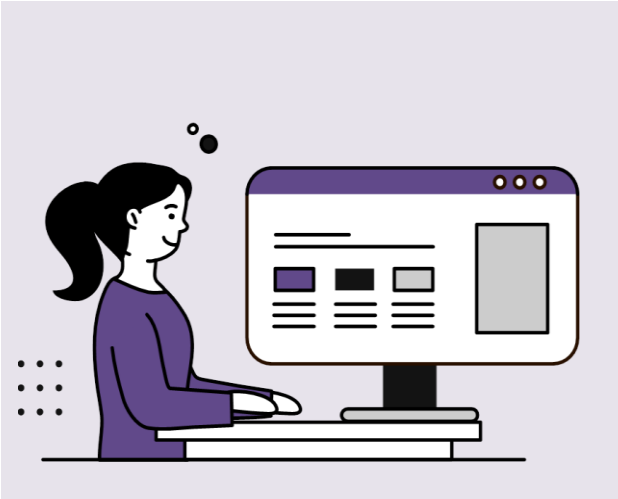

》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01

말(言)·전화

+

02

문자메시지

+

03

홈페이지·
전자우편

말(言)·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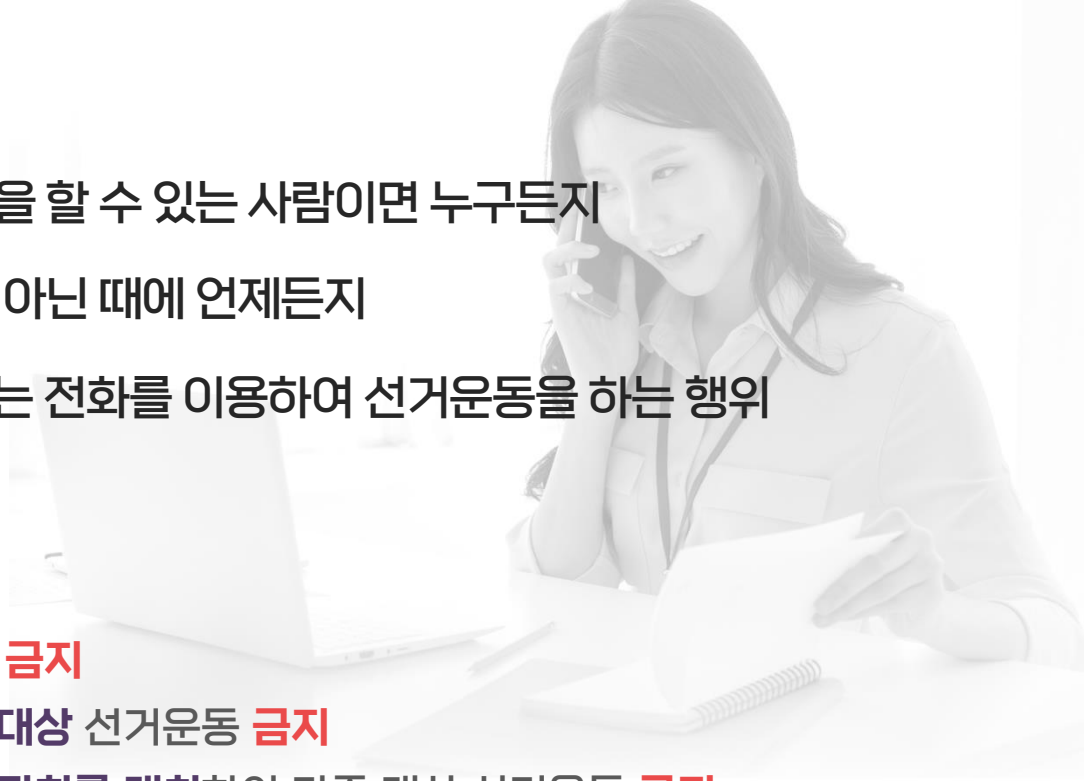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방법	말(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言)

- **확성장치** 사용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 대상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선거운동 금지

전화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됨** (오전6시 ~ 오후11시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금지**

문자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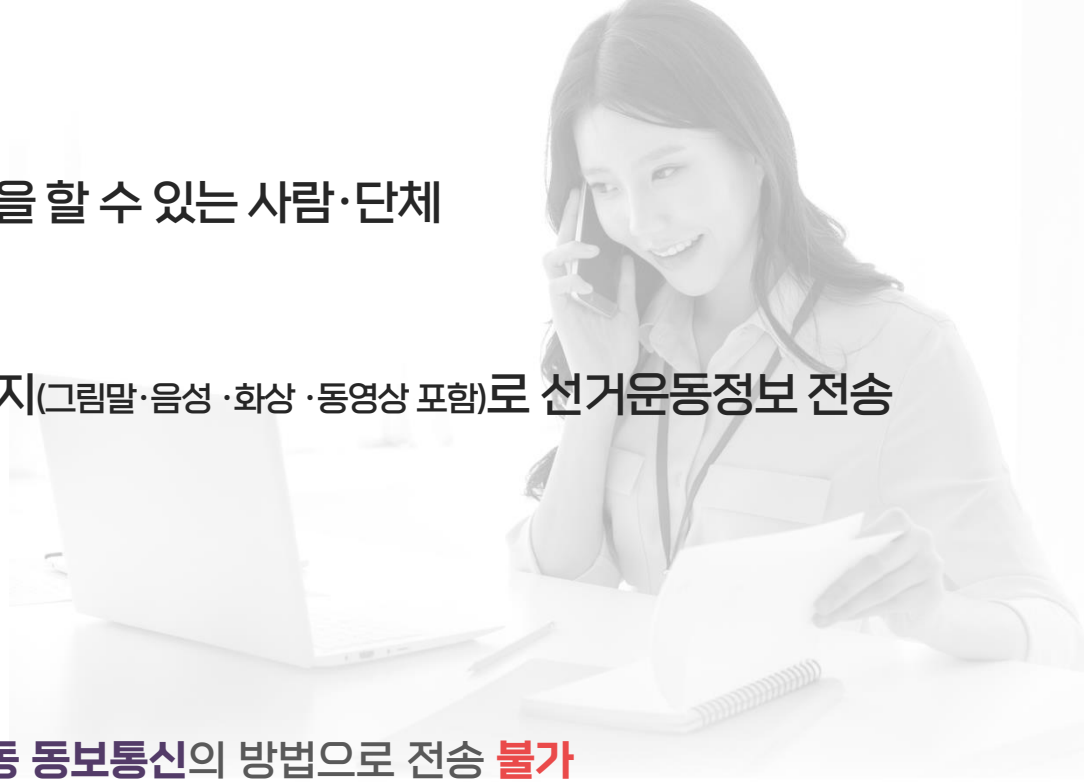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시기	언제든지
방법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불가**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송 불가**
- **수신거부**를 회피·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 할 수 없음**
- 전화요금 등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숫자·부호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자동생성**하여 **전송불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 회 가능!

일반당원 》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말(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전자우편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시기	언제든지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전자우편 이용 선거정보 게시·전송

유의사항

-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 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가능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불가**
  - **(예비)후보자**는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선거운동정보 표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 조치 및 방법 명시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가능한 선거운동

01

자원봉사자

+

02

거리인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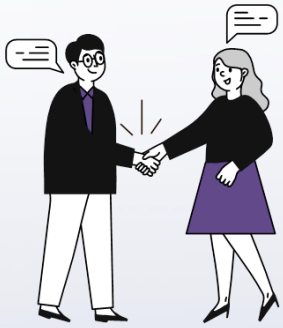

+

03

공개장소
지지호소

자원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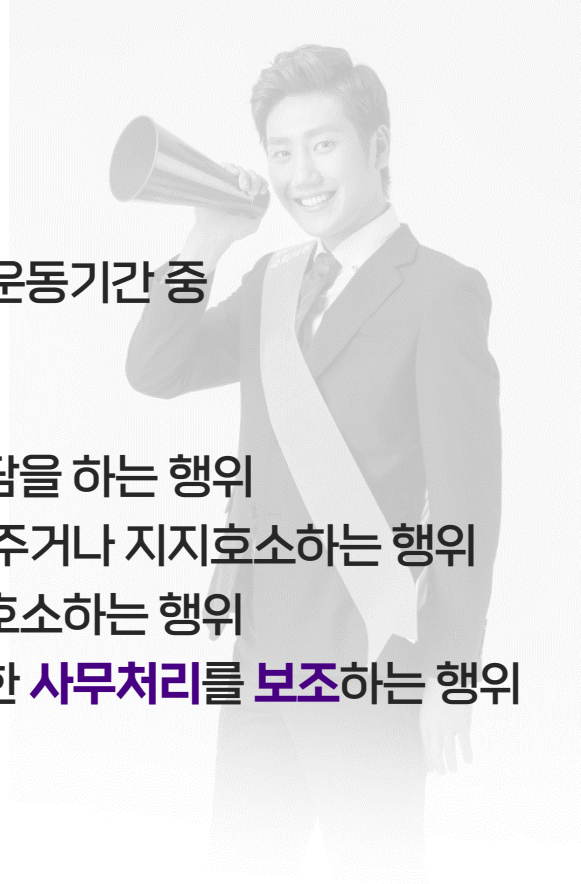

주체·시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선거운동기간 중

방법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지정을 받아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지정 1인이 되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유의사항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지시 ·권유 ·알선 ·요구 ·수령 행위 **금지**

거리인사 등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기	선거운동기간 중
방법	거리 행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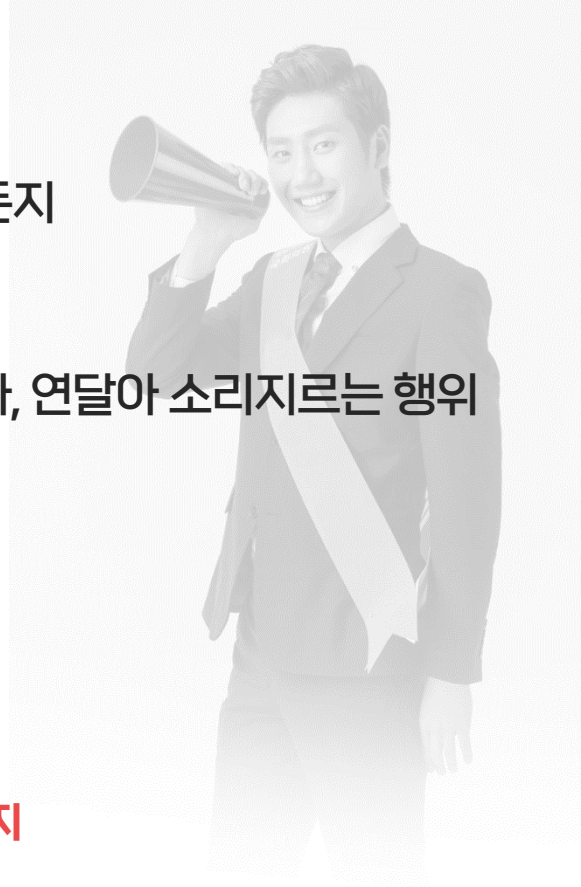

유의사항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초과 금지**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연호 시** 그 수에 **제한 없음**

공개장소 지지호소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기	선거운동기간 중
장소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방법	선거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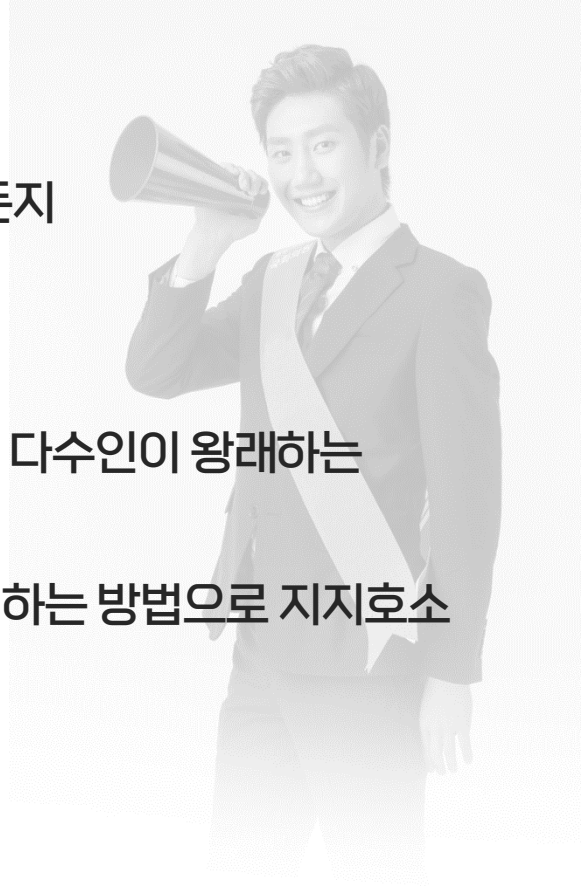

유의사항

- 누구든지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지지호소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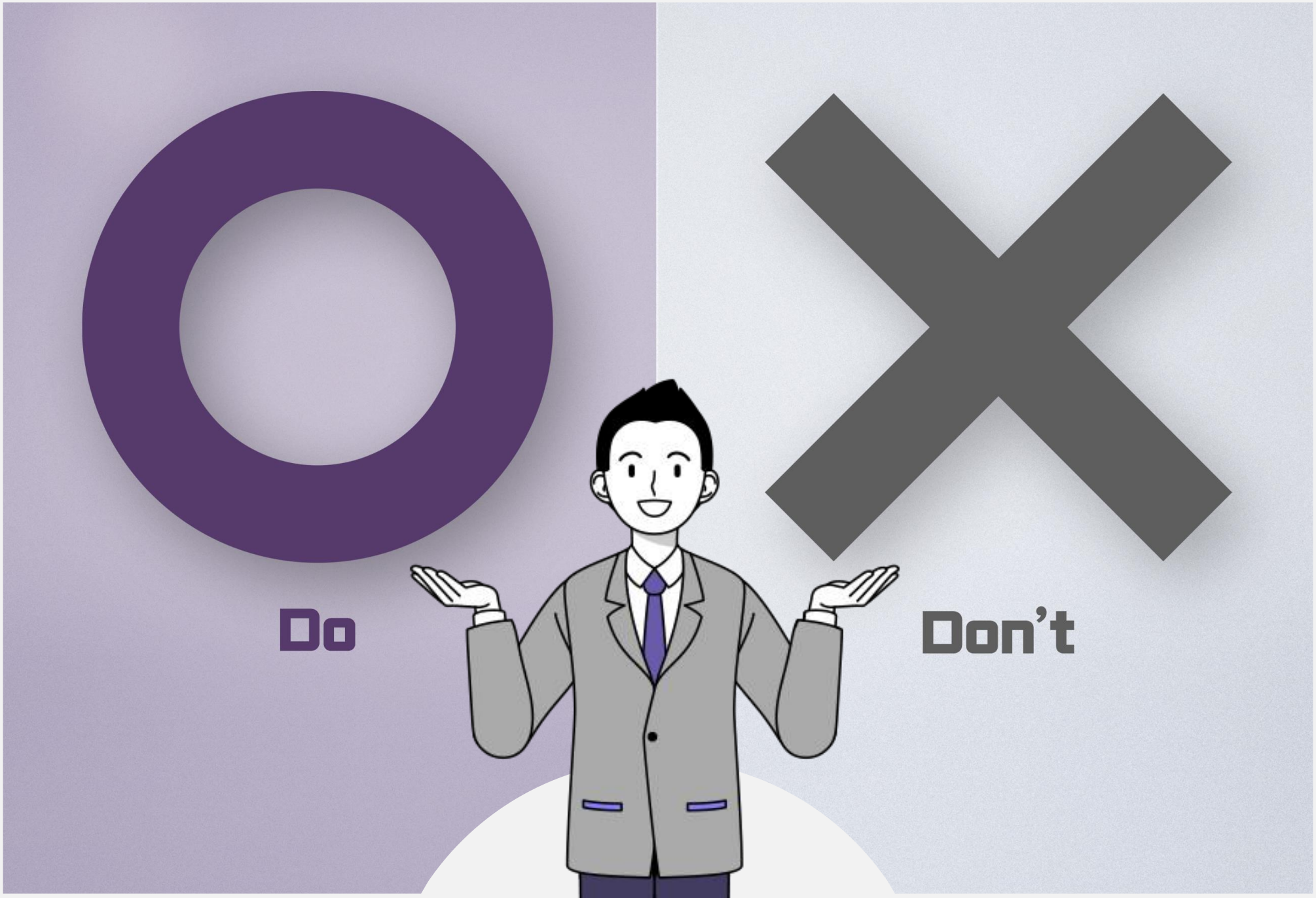
Do
Don’t

D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Don't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경우는 가능함)

-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없음**

-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음

정당의 당원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당원모집
활동(입당원서 배부)을 하면서

구두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2021.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함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호별방문 등 다른 제한·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없는 것을 전제로 함.

Answer

2021. 3.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함**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전화걸기시스템(Auto Dial)을 이용할 수 있는지?

Answer

2021.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동전화걸기시스템이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인터넷전화기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놓으면 그 다음부터 발송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화기 자체에서 자동으로 20인씩 끊어서 발송하는 방법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는지?

Answer

2016. 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함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Answer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하더라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 인쇄물 이용
- 시설물 이용
- 연설·대담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인쇄물 이용한 선거운동

01

명함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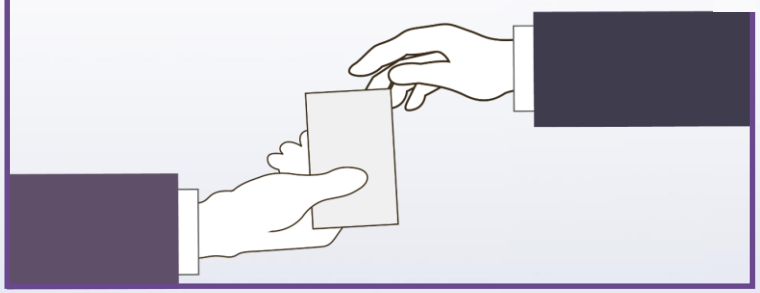

+

02

선거공약서 배부

명함 배부

시기

예비후보자(등록 이후~후보등록마감시각) / **후보자**(선거운동기간 중)

배부 가능자

- (예비)후보자
-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 **직계존비속**(예비후보의 경우 법 제60조① 4~8호 제외)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지정 1인

배부금지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 후보자 명함은 호별방문 배부를 제외하고 배부금지 장소 없음

선거공약서 배부

주체

- 대통령선거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배부 가능자

- 후보자와 그 가족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배부금지

-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특정 장소에 비치·살포하는 방법으로 배부 금지

》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시설물 이용한 선거운동

01

어깨띠 등 소품

+

02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어깨띠 등 소품

종류 및 규격(금액)

- 어깨띠 : 길이 240㎝, 너비 20㎝이내
- 표지물 : 길이 100㎝, 너비 100㎝이내
- 윗 옷 : 3만원(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 이내
-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

예비 후보자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가능

후보자

- 선거운동기간 중
- 후보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주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시기	선거운동기간 중
내용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자동차(선박 10매)마다 5매 부착

첩부수량

- 대통령, 시·도지사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 자치구·시·군의 장 :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 지역구시·도의원 :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이내

유의사항

- 자동차·선박에 선관위가 부여한 표지 부착
- 후보자 사진은 첩부 불가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연설·대담 선거운동

0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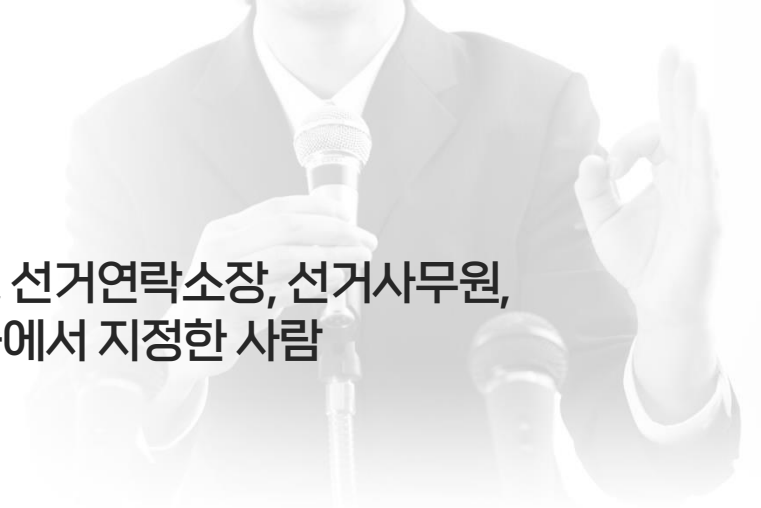

주체

후보자(비례지방의원선거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기간

선거운동기간 중(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녹화기 : 오전7시~오후9시, 휴대용 확성장치만 : 오전6시~오후11시

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유의사항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선거연락소용 자동차 등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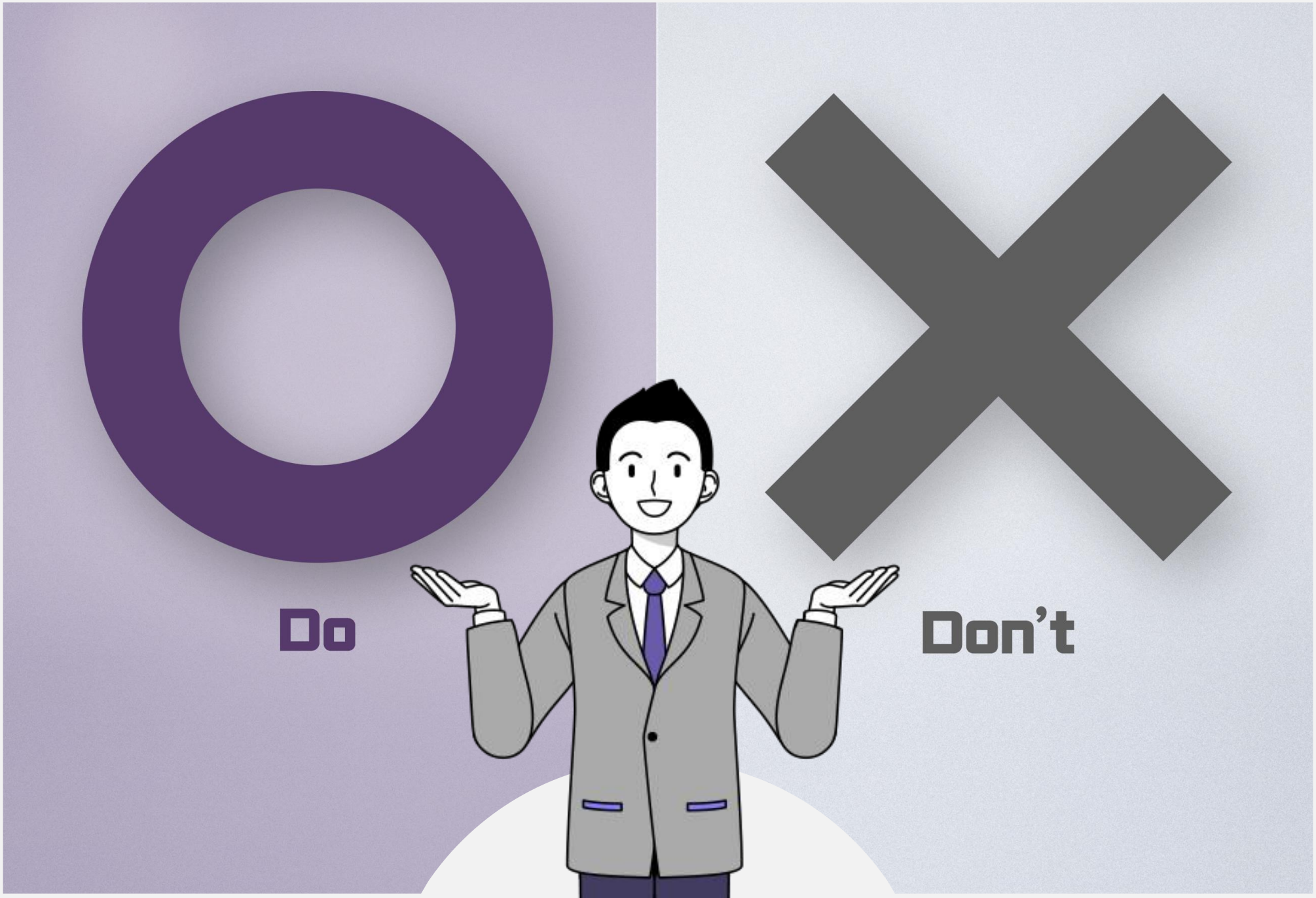
Do
Don’t

Do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하여 연설·대담하는 행위

Don't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연설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선거일**에 선거벽보 등 첩부차량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투표소 근처** 등 다수의 선거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이나 자동차 앞유리에 끼워 놓을 수 있는지?

Answer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할 수 있는것이지 각 세대의 출입문 또는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앞유리 등에 끼워 놓을 수는 없음

어깨띠에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2006.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 회답

무방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로봇을 장착하여 인사만 할 수 있는지?

Answer

2004.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 회답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로봇 등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로봇이 효과음·연설 등의 소리를 내거나 연설·대담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인사를 하는 등의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현수막에 정당대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Answer

선거사무소에 첩부하는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도 **후보자 본인의 사진 외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의 대표자나 같은 정당소속 추천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을 것**임

연설·대담용 차량과 떨어져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2006. 3 .3.

중앙선거관리원회원장 회답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일반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구	인쇄물	시설물
	언론매체 인터넷광고	대담·토론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명 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소 품	예비후보자 공약집
간판 현판 현수막	9cm×5cm	세대수의 10% 이내	어깨띠 표지물	1종 판매

평상시 선거운동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01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 간판, 현판, 현수막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사진 부착가능

+

02

선거대책기구

- 중앙당, 시·도당 사무소 각 1개소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인쇄물 이용

01	02	03	04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 공약서**	**후보자 명함**
✔ 선거구내 거리첩부	✔ 매세대에 우편발송	✔ 후보자 등 직접 배부 (점자형 우편발송 가능)	✔ 선거구민에게 배부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시설물 이용

01	02	03	04
거리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벽보 등 첩부차량·선박**	**어깨띠 등 소품**
✓ 읍·면·동수의 2배 이내 ✓ 규격은 10㎡ 이내	✓ 오전7시~ 오후10시 ✓ 확성장치, 녹음·녹화기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부착 가능	✓ 어깨띠(240㎝x20㎝) ✓ 윗옷(3만원 이내) ✓ 소품(붙이거나 입거나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언론매체 인터넷광고

01 신문광고	02 방송광고	03 후보자 방송연설	04 경력방송	05 인터넷 광고
✓ 일간신문 이용 ✓ 합동광고 가능(시·도지사선거)	✓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시설 ✓ 1회 1분 이내	✓ 1회 10분 이내(대선 20분)	✓ 한국방송 공사(KBS) 방송 ✓ 1회 2분 이내	✓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 키워드 광고 포함

》선거운동 주체별 구분 /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반당원 |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

대담·토론회

01 단체 초청	02 언론기관 초청	03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 옥내에서 개최, 표지 첩부 ✓ 선관위 신고 (개최일전 2일까지)	✓ 언론기관이 자율적 개최 ✓ 내용편집 없이 방송	✓ 초청 후보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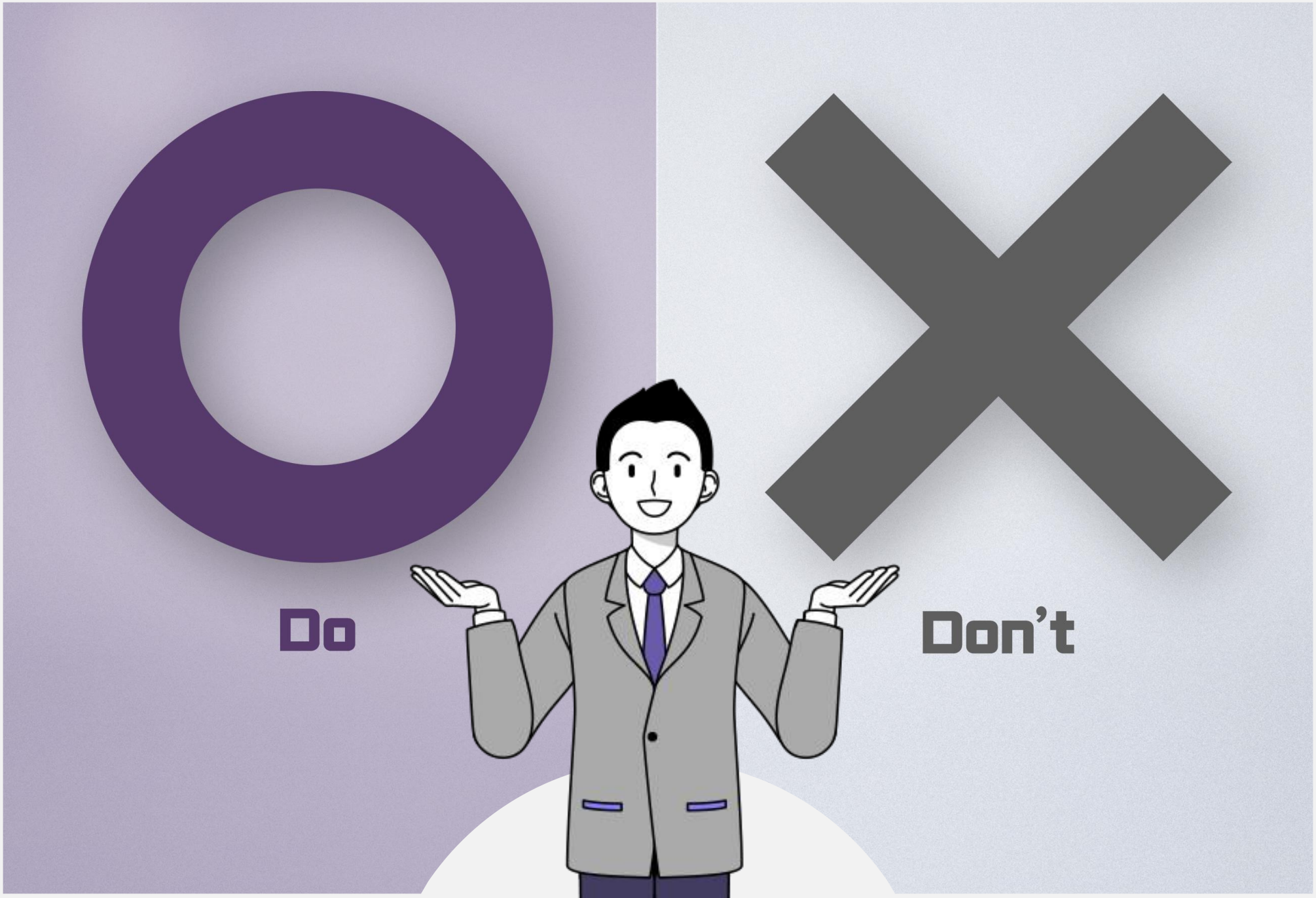
Do
Don’t

D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해당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하나의 읍·면·동에 2매 이상**의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티셔츠의 외관·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Don't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여러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 외에 **다른 인물 사진 게재불가**

선거사무소를

식당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Answer

선거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의 안에는 설치할 수 없음

선거벽보·선거공보에

후보자 학력은 어떻게 게재해야 하는지?

Answer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학력은「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음.

따라서 입학자격에 제한이 없이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의 연구과정인 "ㅇㅇ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나 "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은 학력으로 게재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됨.

또한,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학교명이 바뀐 경우 바뀐 학교명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해야 하며, 중퇴한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후보자와 타인이 함께 촬영한 사진 중에서 타인의 얼굴을 대통령의 얼굴로 교체 합성한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할 수 있는지?

Answer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14 판결

대통령과 정치활동을 같이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찍은 사진 중 타인의 얼굴을 대통령의 얼굴사진으로 교체하여 대통령과 같이 촬영한 것처럼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선거홍보물에 게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세대주에게 배포되게 한 것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같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는지?

Answer

1994.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의 개최 시에 후보자의 프로필 및 정견 등을 담을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대담·토론회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Answer

1997. 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언론기관이 아닌 각종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주요 제한·금지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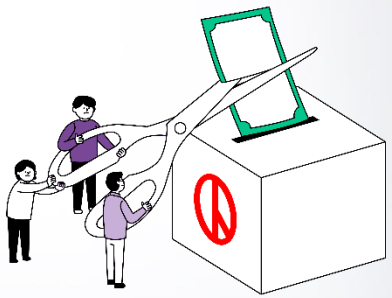

기부행위

02

허위사실
공 표

03

후보자
비 방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기부행위 |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행위주체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제3자 등)

금지기간

- **상시**제한

예외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직무상 행위, 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제공하는 행위

기부행위 |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 기부행위 제한 이유 ”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음 → 선거의 결과 왜곡 →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정경유착 및 부패의 구조화 초래 → 산업자금의 정치자금화 →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금품 등 이익의 제공행위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제231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라 하여 엄격히 규제

》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기부행위 |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주 체 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예정자)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주례행위 포함)
정당(당원협의회·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기부행위 |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주체	누구든지
주관적요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상	후보자(예정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금지행위_당선목적

-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 선전문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금지행위_낙선목적

- 대상자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 선전문서 소지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기부행위 |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주체	누구든지
주관적요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상	후보자(예정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예외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 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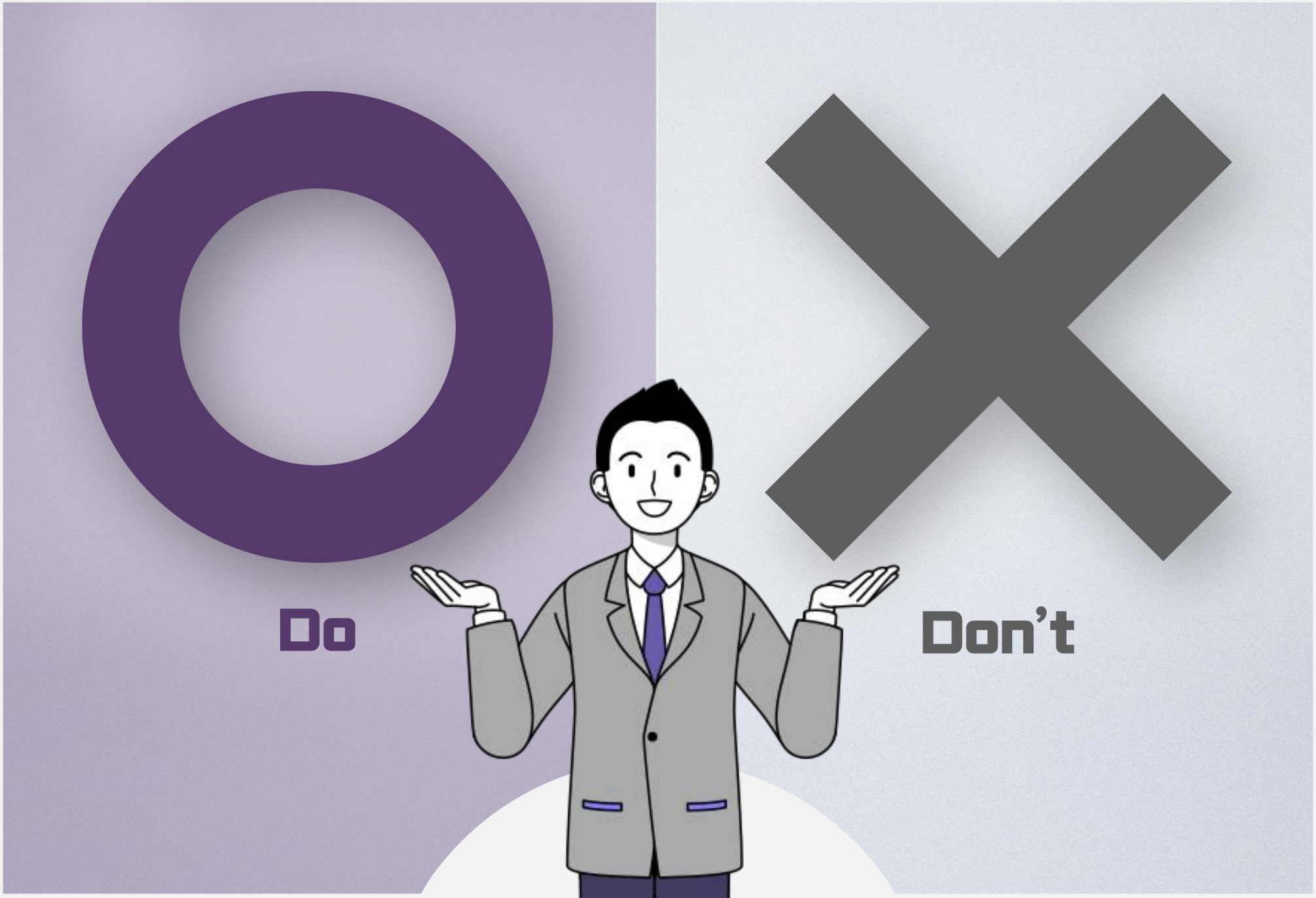
Do
Don’t

선거구민이 후보자나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Answer

후보자나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함

※ 그 제공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형사처벌(§261⑨)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하면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지?

Answer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이면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또는 선거권이 있는지
선거권이 없는지 불문하며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의 '제공'에 중간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고,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 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의 정도는?

Answer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후보자를 위한 감사헌금을

제3자 명의로 제공할 수 있는지?

Answer

광주고등법원 1998. 12. 23. 선고
98노672 판결

후보자의 처형인 교회집사가 "ㅇㅇㅇ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라고 기재된 봉투 속에 헌금을 넣어 자신의 명의로 교회에 제공한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소속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Answer

대법원 1998. 9.22. 선고
98도1992 판결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소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문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도 처벌받는지?

Answer

대법원 2002. 4. 20. 선고
2001모193 결정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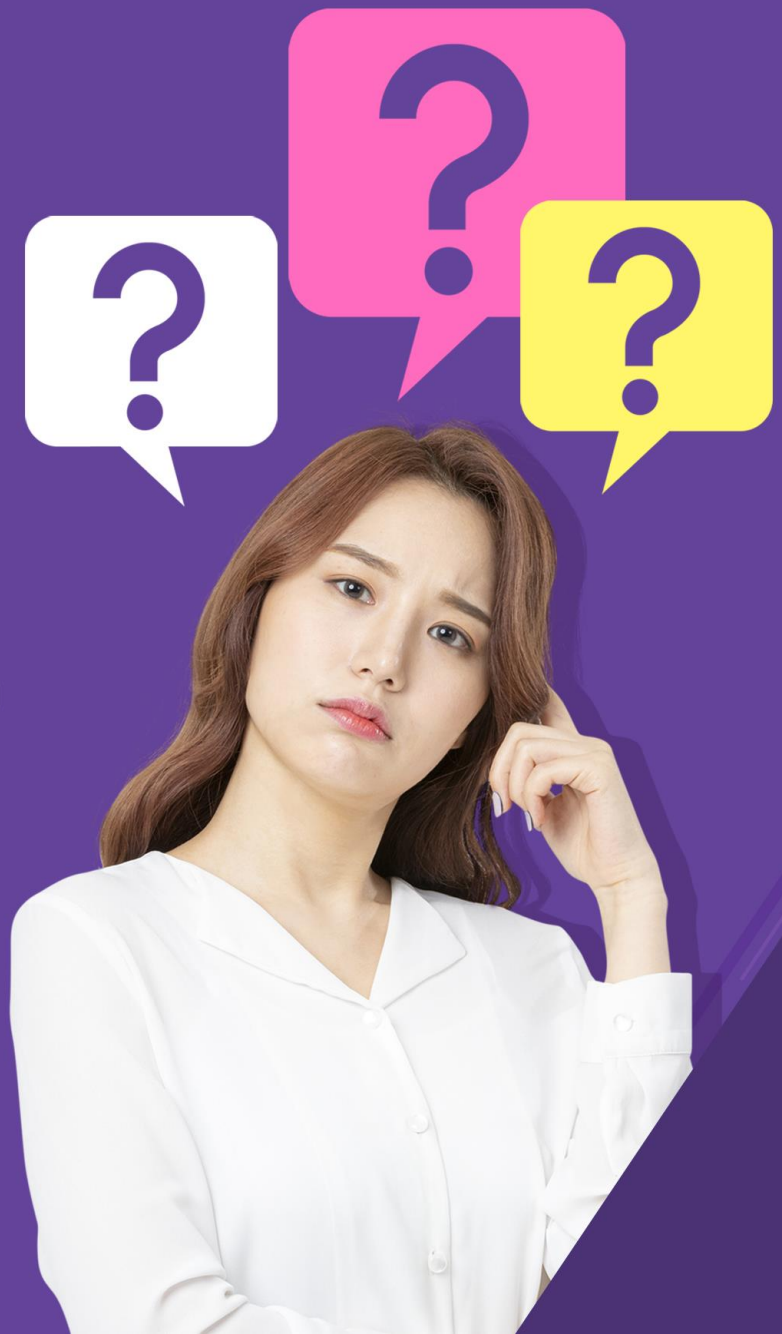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선거안내센터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